

IMF 관리체제하에 있어서 한국 회계의 개혁에 관한 고찰*

남 상 오**

『目 次』

- | | |
|-------------------------------------|-----------------|
| I. IMF 외환 위기를 배경으로 한
한국 회계의 문제점들 | II. 회계개혁의 기본 방향 |
| | III. 결 어 |

I. IMF 외환 위기를 배경으로 한 한국 회계의 문제점들

1997년 12월 우리나라가 외환부족으로 국가적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國際通貨基金(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 國際復興開發銀行(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보통 世界銀行: the World Bank라고도 함)과 함께 곧바로 한국에 도착하여 IBRD자금을 투입하면서 우리나라는 IMF의 관리 체제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재무구조가 부실한 종합금융사의 퇴출을 시작으로 제일은행의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매각,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한빛은행으로의 통합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기업간의 빅딜에 의한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간의 맞교환,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 현대전자의 LG반도체 인수 등 엄청난 경제의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주로 5대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기업부도와 구조조정으로 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실업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1998년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고, 1999년 초에는 수출증가, 금리하락, 증권시장의 호전,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으로 경기가 회복되어 가면서 금명간에는 IMF도 졸업하리라는 전망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1999년 전반기인 현재 많은 대기업이 구조조정으로 몸부림치고 있고, 많은 실업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IMF를 졸업하기에는 혐난한 길이 아직도 예상되고 있다.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상의 일련의 IMF 외환위기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의 중요 원인 중에는 회계문제가 있었다. 기업들의 회계장부를 믿을 수 없고, 경영자는 원하는대로 회계장부를 마음대로 조작하며, 정부, 감독자, 경제단체, 회계전문직은 분식결산을 방조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IMF 사태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이 기업을 매각하고자 할 때 외국의 투자자들은 무엇보다도 한국기업의 회계장부를 불신함으로써 한국기업을 사들일 수가 없었다.

IMF 외환위기가 오게 된 근본 원인 중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과행적 형태에도 기인한다. 다른 나라의 기업과는 달리 경제구조가 재벌기업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재벌기업이 우리나라의 판매, 생산, 금융, 고용의 모든 부문을 지배하고 있다. 특히, 재벌기업 중에서도 현대, 삼성, 대우, LG, SK의 5대 그룹은 막대한 규모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들 5대 그룹 및 다른 재벌기업이 재무구조가 나쁘고 부채에 의존하여 경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을 독점하고 독과점에 의하여 공정거래를 해치며, 내부거래와 상호지급보증에 의하여 계열회사의 수를 늘리는 문어발식 확장을 일삼고,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영업 범위를 넓힘으로써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없게 되는 문제들도 있었다. 이들 재벌 기업들은 재벌단위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음으로써 종전의 개별재무제표나 연결재무제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재벌기업 중에 중요 기업에 부채과다 등의 문제가 있으면 수십 개의 계열 회사가 모두 연쇄 도산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의 IMF 외환위기는 정부당국자(특히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가 위기사태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원인이 있지만 재벌기업 또는 기업들의 지나치게 나쁜 재무구조, 분식결산, 회계기준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기업이 빚쟁이 회사가 되고, 나라 전체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재벌기업이 새로이 구조조정 되어야 하고 정부당국자도 반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II. 회계개혁의 기본 방향

1997년 말 한국에 외환위기가 불어 닥치고 IMF와 IBRD가 IBRD자금을 한국에 투입하면서, 한국의 잘못된 경제제도, 경제관행 그리고 회계제도에 대해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IMF는 주로 거시경제면에서 경제정책을 그리고 IBRD는 금융, 회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안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재정경제원도 IMF, IBRD의 전의에 따라 금융기관의 매각, 합병 등의 조치를 하였고 회계제도의 개선에 착수하였다.

IBRD에서는 한국의 회계제도에 다음과 같이 전의하였다.

- ① 결합재무제표를 1999년도분부터 작성할 것
- ② 1999년도부터는 최고의 국제회계실무(international best practice)에 의해 회계처리와 감사실무가 수행되도록 할 것
- ③ 독립적인 회계기준 제정기구(independent accounting standards setting organization)를 1999년 6월까지 설립할 것.
- ④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역할을 중대하고, 정부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감사실무를 개선하도록 할 것. 감사기준의 제정, 감사수수료의 책정, 감사인의 배정, 감사인의 평가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것. 공인회계사회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이상의 네 가지 주요 전의사항에 의해 그 동안의 한국의 회계제도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결합재무제표제도가 입법화되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고 기업회계기준에도 추가 되었다. 최고의 국제회계실무를 지향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이 1998년 12월 11일 개정되었다. 기업회계기준은 시급하게 국제회계수준으로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國際會計基準(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을 많이 참고하여 도입하였다.

기업회계기준 제정기구의 도입과 감사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IBRD의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그룹을 만들어 프로젝트를 행하였고, 현재에는 그 결과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IBRD와의 협약과는 달리 회계기준 제정기구를 독립된 민간기구로 만들거나 감사제도의 대폭적인 개혁도 고려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서 계속 그 권한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BRD의 네 가지 개선책은 우리나라 회계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뒤에 네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회계의 개혁방향을 설명하기로 한다.

한국에 있어서 회계개혁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IBRD의 개선책도 고려된 것이다.

첫째, 회계의 투명성(transparency)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회계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보 이용자들은 경영자들이 기업경영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개별재무제표가 공표되고 심지어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어도 기업경영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이 많았다. 더군다나 경영자가 분식결산까지 하기 때문에 회계정보의 정보로서의 가치는 더욱 앓

게 되었다.

회계의 투명성 문제는 기업의 경영방식과도 관련되고 있다. 기업경영방식 중에서도 이미 IMF사태의 주요원인으로 재벌기업이 지목되고 재벌기업의 과다한 부채와 함께 계열사 수 늘리기의 과대성장이 지적되었다. 재벌기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벌기업간의 빅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상호지급보증의 금지, 내부거래의 억제,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감사위원회의 도입이 실행되었거나 곧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회계의 투명성을 위하여 개선되는 중요한 것으로 결합재무제표(combined financial statements)의 작성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재벌기업 단위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까지는 재벌기업 단위로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았었다. 이제 재벌기업을 투명하게 하여 모든 계열회사를 통합한 재벌기업의 실체가 드러나 재벌기업의 규모도 알려지고 재벌기업단위로 평가할 수도 있어 대출심사, 신용평가, 투자결정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전자공시제도는 공시제도의 혁신으로 종전의 상법에 의한 대차대조표공고, 증권감독원 등에 의한 공시 자료의 열람 등의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컴퓨터시대에 전자공시 제도는 진작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제도이다.

회계의 투명성 개선에 있어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공시항목의 개선이다. 부분별 정보의 개선,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업장에 관한 공시정보의 공개 등이 있다. 그밖에 분기별 보고도 중간보고(interim reporting)의 개선으로 제의되고 있다. 현재의 반기별 보고는 지나치게 늦어 시기면에서 문제가 있다.

둘째, 최고의 국제회계실무로 우리나라의 회계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국가간의 회계수준은 매우 다르다.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국제회계수준은 미국의 회계수준으로 미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U.S.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U.S. GAAP이라고 부름)은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회계기준은 1940년대부터 정립되고 ARB(Accounting Research Bulletins), APB Opinions(Accounting Principles Board Opinions), FASB의 SFAS (Statements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은 1970년대부터 발표되는 것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회계기준을 참고하되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예외를 고려하여 만든 규정이다. 국제회계기준은 미국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자존심 이외에도 너무 엄격한 기준에 대해 예외를 두고 싶어하는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여 만든 기준이다.

국제회계기준은 별도의 연구노력을 하여 만든 연구결과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을 이론가나 연구자가 모여 만든 것이 아니고 회계실무가인 여러 나라의 공인 회계사들이 모여 토론하고 합의하여 만든 것으로 연구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다. 미국과 똑같은 회계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다른 기준도 제정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보다 더 엄격한 미국기준으로부터 도망가고 저급한 회계실무를 인정하려는 의도에서도 국제회계기준을 인정하려는 의도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모델로 벤치마킹하여야 할 회계기준으로 미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이 모두 되어야 한다. 이를 기준을 벤치마킹하되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나 독특한 회계처리가 필요할 경우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결합재무제표는 우리나라에서만 거론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너무 예외를 많이 만들면 안 된다.

1998.12.11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미국기준보다는 국제회계기준에 일치시켰다. 더군다나 충분한 연구나 시간적 여유가 없이 성급하게 기업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회계기준보다 국제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은 우리나라 회계가 열등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을 먼저 따르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할 수 있다. 또 미국회계기준보다도 국제회계수준이 범세계적 회계기준이고 앞으로 미국에서도 국제회계기준을 인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장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회계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다만 지나치게 예외를 인정하고 분식결산을 지나치게 허용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최고급의 회계기준이 아닌 차상급의 회계기준을 따름으로써 우리나라 회계기준을 스스로 낮은 수준으로 몰아 넣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셋째, 분식결산을 과감히 추방하여야 한다. 특히 회계변경에 의한 이익조정을 상당히 억제하는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에 있어서 분식결산은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던 관행으로 기업인은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분식결산을 하였다. 한보칠강, 기아자동차 등 수 많은 기업들이 분식결산을 하였는데,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재무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썩어 최악의 상태가 됨으로써 파산, 부도에 돌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빚어졌다.

분식결산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회계변경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너무 회계변경을 자주하고, 감사인에 의해서도 회계변경이 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계속성과 비교가능성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해석」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변경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하나 기업은 이들 규정을 모두 무시하고 마음대로 회계변경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나치게 임의적 선택규정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 준칙, 해석에서 “한다”라는 강제적 규정 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많이 둠으로써 기업이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임의적 선택을 많이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 준칙, 해석의 곳곳에는 이러한 임의적 선택을 규정하고 있다. 어느 의미에서선 임의적 선택을 요구하는 기업계의 요청에 대해 정부감독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여 임의적 선택을 허용하고 있는 느낌이다. 자산재평가를 임의로 할 수 있고, 특별상각도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임의적 선택을 허용하였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내용연수의 연장에 의한 추가적인 감가상각 등 수 많은 규정에 있어서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여 기업이 임의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이러한 임의적 회계 처리는 가능한 한 강제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임의적 규정의 남용은 기업회계를 혼란시키고 분식결산을 자초하는 결과가 된다.

넷째, 회계기준의 제정과 회계감사제도의 운영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축소하여야 한다. 회계기준의 제정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민간기구를 창설하고, 감사제도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며 자율적으로 회계감사수준을 높이도록 측면에서만 도와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회계규제는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회계기준의 제정과 회계감사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인회계사 시험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역할강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회계정보의 투명성은 낮고, 분식결산이 자행되었으며,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졌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회계규제는 官治會計에 의해 이루어졌다. 官治會計는 官治金融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제제도를 잘못 이끌어가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관치회계는 정부의 권력에 의하여 회계를 규제하고, 회계기준을 제정하며 기업의 회계를 감독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감독하여 모든 회계를 정부가 관리, 감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치회계로 정부의 권한이 강해지고 관료가 권위주의적, 형식적으로 회계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기

업 위주의 회계, 세무회계 위주의 회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회계기준을 정부가 제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회계기준의 제정에는 학술적 지식과 함께 연구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계기준의 제정과 집행에는 엄격한 준수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회계기준을 정부 관리가 제정하지 않고 민간기구나 학계에 맡기고 있다.

회계기준의 제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재정경제부의 사무관,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소수의 직원으로 방대한 연구나 기준제정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벅차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의 기준제정태도로 보아 기업위주의 회계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기업 편의로 회계 규정을 운영하는 경향도 있었다. 세무회계 위주의 사고, 그리고 증권시장에 대한 영향에 지나치게 얹매이기도 하였다. 분식결산을 지나치게 허용한 것은 이러한 기업편의나 기업의 기대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회계기준의 제정업무는 독립적인 민간기구에서 수행하고 정부감독기관은 감독업무와 처벌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FASB 업무를 수행하려 하지 말고 SEC 업무만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은 회계와 감사에 있어서 SEC 업무뿐만 아니라 FASB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지도 못하고 모두 놓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감독 업무에만 집중하되 증권감독 업무, 회계기준 준수여부, 감사에 대한 감독 업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독립적인 민간기구의 설립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반대도 만만치 않다. 반대는 주로 정부관리 및 지금까지 회계기준 제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그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정부의 권한이 줄어들고 해당 분과의 축소가 있을 수 있다.
- ② 민간기구의 설립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상설 기구의 운영에 드는 비용도 많을 수 있다.
- ③ 민간기구가 회계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정부가 회계기준 제정이나 회계 규제를 통제할 수 없고 때에 따라서는 정부의 정책 수행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 ④ 민간기구가 잘못 설치되면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이론적이 되어 실용적이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 능률이 떨어질 경우 회계규정이 지나치게 늦게 제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반대 이유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독립적인 민간기구에 의한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

- ① 회계 기준의 제정과정이 관료적이 된다. 정부관리가 규제권을 갖고 있으면 권위주의적, 형식적, 비민주적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정부관리가 공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공익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취하거나 권위를 내세우는 수가 많다.
- ② 자유경쟁을 제한하거나 비민주적일 수가 많다.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줌으로써 경쟁을 제한한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경쟁을 함으로써 동기부여가 일어날 수 있고 민주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 ③ 정부관리는 회계학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연구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론적이기 보다 도 실무적이거나 규제적인 방향에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학문적 지식과 연구 없이는 회계규제나 회계기준의 제정에 문제가 많은 것이다.
- ④ 회계규제에 있어서 정부의 잘못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세무회계 중시의 회계, 이익주의의 과도한 허용은 잘못이라고 볼 수 있다. 회계기준을 제정하면서 기업의 편을 들어 기업 위주로 제정하는 경향도 많았다. 이로 인하여 분식결산이 횡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독립적 민간기구의 창설에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현재처럼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금융감독원에 속하여 있으면 돈의 절약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나라의 회계제도를 위하여 그만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독립적 민간기구의 설치를 위해서는 사무실, 인건비가 필요할 것이고, 많은 연구비가 필요할 것이다. 종전에는 연구비도 많이 책정하지 않았었는데, 연구비가 많이 책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회계기준심의회 이외에 회계연구원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예산 편성에는 초기에 수십억원의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고 다음에는 증권거래나 채권거래에 부과금을 물려 경상비를 조달하면 될 것이다.

감사제도에 대한 개선도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독립적 민간기구화와 마찬가지로 민간기구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더 많은 자율권을 주고 그 역할을 강조하여야 한다.

정부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산하단체 내지 업자단체로 간주하고 공인회계사 시험도 치러서 자격도 주고, 감사기준도 제정하며, 윤리기준도 제정하고, 업무도 상당수를 배정하며, 감사업무에 대해 특별감리뿐만 아니라 일반감리도 하고, 감사평가제도도 실시하고, 감사인에 대해 제재도 한다. 즉, 정부가 감사의 모든 부문에 대한 관여를 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만능식 감사인 규제로 감사의 질이 높아지기는커녕 계속 많은 문제를 노정하여 왔다.

이와 같이 감사인에 대해 모든 부문을 감시하기 보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자율에 맡기고 감사수준을 스스로 높이도록 노력하게 하고 잘못된 감사나 말썽난 감사에 대해서만 조사하거나 제재만 하면 되는 것이다. 표본조사에 의한 일반 감리는 모든 감사인에게 설득력을 주기 보다는 잘못하여 조사 받게 된 불행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효과가 적다.

정부에서 모든 감사인의 행동에 대해 감독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법무부가 모든 변호사를 감독한다든가 보건복지부가 모든 의사를 감독한다고 해보라. 이제 공인회계사의 수가 늘어 적정 감독폭의 원칙도 이미 깨진지 오래이다. 변호사, 의사 모두가 자율적으로 맡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으며 단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이 처벌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들은 그렇게 감독을 받아 왔지만 IMF로 분식결산이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받은 공인회계사는 거의 없다. 즉, 정부의 감독도 철저하지 못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인회계사회의 능력에 대해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공인회계사회가 무력하거나 괴동적이 된 것은 官治監查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회에 자유와 역할을 준다면 충분히 해 낼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들 공인회계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감사수준을 높이지 못할 경우 감사시장의 해외개방과 같은 극약처방도 있을 수 있다. 감사시장의 개방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먼저 국내공인회계사들이 자율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감사수준을 올리도록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문제가 있는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지정, 감사인평가제도는 정부의 지나친 관여라고 할 수 있다. 감사인간의 자유 경쟁을 저해하고, 정부권력을 강화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인 평가제도에 있어서 객관적 평가기준의 제정이 어렵고, 감사인을 평가순위에 따라 일렬로 세우는 것도 바람직한 평가태도가 아니다. 이러한 관치감사의 강화는 민주화, 자율화를 지향하는 길목에서 더욱 바람직하지 못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III. 결 어

한국경제가 IMF의 관리체제하에 놓이면서 많은 분야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업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IMF의 피로움을 감내하고 있다.

이러한 IMF의 관리 속에서 IMF위기가 오게 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회계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회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종전과 마찬가지고 회계를 꾸려 나가려고 하고 있다. IMF사태로 회계의 모든 부문이 개혁되어야 하고 제도적 개선도 따라야 한다. 단순히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라고 하든가 전자공시제도를 하게 되었다는 데에

서 회계문제가 모두 풀린 것은 아닌 것이다.

한국의 회계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최고의 국제회계실무로 회계수준을 높이며 분식결산을 추방하고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민간 기구화와 공인회계사회의 역할증대와 자율적 감사제도의 확립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네 가지 목표에 대해 정부인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적극적인 개혁보다는 소극적인 개혁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미국회계기준보다는 국제회계기준을 우선시 하여 차선책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분식결산에 대한 엄정한 자세나 처벌은 보이지 않고, 회계기준 제정기구는 독립적 민간기구화 보다는 종전처럼 금융감독원에 그대로 두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역할 증대나 자율적 감사에 대해서도 많은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1998년 12월 11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중에서도 아쉬운 것은 자산재평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제도는 폐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존속하여 2000년 말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더군다나 자산재평가는 상각내상 자산 뿐만 아니라 토지까지도 재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자산재평가로 기업들은 자산을 늘리고 자본금을 늘려 재무구조를 양호하게 하고 부채비율을 좋게 하고 있다. 정부에서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하라는 데 대해 자산재평가가 가장 큰 공로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기업들은 자산재평가로 더 좋은 재무구조의 기업이 되었는가? 외국 기업들은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과 비교가능한 것인가? 자산재평가는 또 하나의 분식결산인 것이다. 가만히 있는 기업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함으로써 부채가 과다한 기업이 부채가 적게 보이도록 하는 회계수단을 더 이상 미화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자산재평가의 악습도 IMF로 인한 한국회계의 개혁에서 청산할 과제 중의 하나인 것이다.